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서형석(6535)/ E-mail: kma_sh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2-09944호

시행일자 2023. 11. 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」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(건강보험심사평가원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-7101(2023.10.24.)

3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에서는 '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'를 다음과 같이 제공 중이며, 이를 유관기관 등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협조를 요청해온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○ 제공내용 :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으로 위해의약품이 유통된 정보

항목	내용
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	식약처 회수명령 발생 시 해당 의약품 보유여부 안내 * 회수명령일 기준, 최근 3개월 이내 입고된 의약품
회수의약품 입고 알림	회수대상 의약품 입고 시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, 공급일자, 제조번호 등 정보 안내
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	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입고 시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, 공급일자, 유효기한 등 정보 안내
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	유효기한이 임박한 의약품 입고시 해당 의약품 정보 및 처방·조제 유의 안내

○ 제공방법 :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위해의약품 입고 등 유통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

○ 신청방법 : 요양기관업무포털(<https://biz.hira.or.kr>) 인증서 로그인 후, ① 또는 ②

① 팝업창 안내 이미지의 '신청하기' 버튼 클릭

② '진료비청구 >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> SMS신청' 메뉴 접속

※ 붙임 :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안내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16개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각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